동반성장론 중요내용 설명서(협력기업용)

현 행	개 정	비고
1. <생략> **2. 상품흐름** • 채권의 발행 - <생략> - <생략> ※ 1. 1차 협력기업 : 받은 채권금액에서 이미 발행한 상생매출채권금액 및 본인이 대출을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, 구매기업과 은행이 약정한 상생매출채권발행가능일부터 매출채권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최저 1백만원 이상으로 채권발행 가능. 다만, 원청채권 결제일 당일에는 상생매출채권을 발행 할 수 없습니다. 2. 2~3차 협력기업 : 받은 채권금액에서 이미 발행한 상생매출채권금액 및 본인이 대출을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, 받은 채권발행일+1은행영업일부터 매출채권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최저 1백만원 이상으로 채권발행 가능. 다만, 원청채권 결제일 당일에는 상생매출채권을 발행 할 수 없습니다. 3. <생략> **<생략>**	**1. <좌동>** **2. 상품흐름** • 채권의 발행 - <좌동> - <좌동> ※ 1. 1차 협력기업 : 받은 채권금액에서 이미 발행한 상생매출채권금액 및 본인이 대출을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, 구매기업과 은행이 약정한 상생매출채권발행가능일부터 매출채권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최저 1만원 이상으로 채권발행 가능. 다만, 원청채권 결제일 당일에는 상생매출채권을 발행 할 수 없습니다. 2. 2~3차 협력기업 : 받은 채권금액에서 이미 발행한 상생매출채권금액 및 본인이 대출을 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내에서, 받은 채권발행일+1은행영업일부터 매출채권 만기일 전 은행영업일까지 최저 1만원 이상으로 채권발행 가능. 다만, 원청채권 결제일 당일에는 상생매출채권을 발행 할 수 없습니다. 3. <좌동> **<좌동>**	상생매출채권 발행가능금액 변경 상생매출채권 발행가능금액 변경